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준제정수요액 산출시 군사시설 지역 특수성 고려〉

■ 김용태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65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시 군사시설 지역 특수성 고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13.
3. 회부연월일 : 2025.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정량적 통계수치만을 활용하는 산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사기지 등의 인접지역은 규제에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기반 시설 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시 군사시설 지역 특수성 고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할 때,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② (생략)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③ ----- ----- ----- ----- -----.
1.·2. (생략) ¹⁾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생략) ²⁾	4. (현행 제3호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함. 이 때, **기준재정수입액**은 재정수입 및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³⁾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교육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산정한 금액⁴⁾을 의미하는 것임.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따라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측정항목**은 크게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로 구분할 수 있고, **측정단위**는 공무원수, 인구수, 사업체종사자수, 자동차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⁵⁾.

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3) 「지방교부세법」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4) 「지방교부세법」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 1]

한편, 단위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하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에 따른 기준세율 등을 고려함6).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하여 정한 후,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 지역간 균형 발전 및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조정사유에 군사시설 소재지역의 특수성도

측정항목·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1. 일반행정비	가. 인건비	공무원수	명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수	명
	다. 안전관리비	인구수	명
2. 문화환경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수	명
	나. 환경보호비	인구수	명
3. 사회복지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명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명
	다. 아동복지비	아동수	명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명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수	명
4. 지역경제비	가. 농업비	경지면적	천제곱미터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제곱미터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명
	라. 도로관리비	도로면적	천제곱미터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대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면적	천제곱미터

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포함하려는 것으로, 군사시설이 지역개발과 주민편의에 제약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제4호7)에 이미 국방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보정요소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에는 재정기준수요액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사유(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 지역간 균형 발전, 기타의 사유로 기준재정수요액의 불합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세분화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중의 하나의 사유만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7)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4.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별표4: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1. 지역균형		
	파. 보호 및 규제구역 (시·군·구)	③ 지역개발 규제지역 • 개발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u>군사시설 보호구역</u>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면적 $\times 120\% \times 1\text{천}\text{㎡}$ 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times 20\%$ ※ 개발제한구역 수요 산정액은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모두 반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참고로, 국방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제4호 및 별표4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을 보정수요로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법조문과 중복 우려가 있고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임.

반면, 하남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서 개발과 주민 편의에 큰 제약이므로, 법률에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